

전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8나10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8나1005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259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섭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철휘

변론 종결2021. 3. 11.

판결 선고2021. 4. 15.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2593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11,11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2018. 2.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8. 10. 4. 원고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카명11145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2018. 10. 8.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8. 10. 10.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4.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3885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1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700,468원과 그 중 5,700,409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2015.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9.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11,111원(이 사건 부동산 시가 51,500,000원 중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1. 10. 19. 접수 제5534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27,500,000원에 대한 B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6,111,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에 대하여 15,035,013원의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3220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1. 12.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035,0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F에게 15,035,013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F가 피고 소유의 익산시 G, H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1. 25. F에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F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얻은 수익액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가액의 회복까지 마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0.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32202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다투면서도 후행소송에서는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소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리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0.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32202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가 2020. 8. 28. 위 사건의 소장부분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2020. 11. 12.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각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복수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가 후행소송보다 선행소송 채권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별지